



## -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-

- 금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은 불법·불량 전기용품 유통을 줄이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2005년 3월31일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하위 법령을 개정하게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
  - 반신욕조, 빙삭기, 커피분쇄기 등 34개 품목 안전인증대상으로 추가 지정
  -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과기 또는 수거명령
  - 시·도지사만 실시하던 불법전기용품조사권한을 민간단체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도 부여
  - 제품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연 1회의 정기검사를 2년 주기의 정기검사 실시
  -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·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검사 신청
  
-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216개 품목에서 247 품목으로 확대
  - 신개발품 또는 물, 습기 등이 있는 곳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감전 우려가 있는 품목(15품목)
    - 반신욕조, 발욕조, 음식물 처리기, 빙삭기, 커피분쇄기, 무전극 램프 및 안정기, 전기칼갈이, 전기깡통따개, 전기칼, 프로젝터, 수은램프, 메탈할라이드램프, 나트륨램프, 조명기구용 조광기, 전기훈증 살충기
  - 기존 안전인증대상 품목과 유사한 품목(19품목)
    - 전기욕조, 전기거치식 그릴, 계란반죽기, 안면사우나기, 증기조리기, 손전조기, 전기고기구이기, 우유가열기, 요쿠르트 제조기 등 19품목
  -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된 품목(3품목)
    - 욕조용기포발생기(전기욕조가 인증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제외), 직류전원장치(음향기기용 및 정보기기용 직류전원장치를 통합), 전기소독기(조명기기에서 전기기기로 변경)
  
- 불법·불량 전기용품 유통근절을 위한 제도정비와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
  -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에 대한 생산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다양한 제



품이 개발되고 품질·기능·디자인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은 전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조업체의 노력 부족으로 최근 압력밥솥 폭발, TV 화재, 휴대폰 충전기 화재 등 안전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제도 정비와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힘

참고 1

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품목 조정 현황

구 분	현행 품목수	조정 품목수	조 정 품 목
1.전선 및 전원코드	10	10	-
2.전기기기용 스위치	10	10	-
3.전원용 커패시터	3	3	-
4.전기설비용 부속품	14	14	-
5.전기용품 보호용부품	6	6	-
6. 절연 변압기	3	3	-
7.전기기기류	104	131	<추가> 전기거치식그릴,전기고기구이,와플기,핫플레이트, 크림거품기,계란반죽기,혼합기,버터제조기,압즙기,슬라이스기,전기칼갈이,전기깡통따개,전기칼,커피분쇄기,빙삭기,달걀조리기,우유가열기,젓병가열기,요구르트제조기,증기조리기,손건조기,인면사우나기,전기욕조,반식욕조,발욕조,전기소독기,음식물처리기,전기훈증살충기 <삭제> 육조용기포발생기
8.전동공구	17	17	-
9.오디오·비디오 응용기기	25	25	<추가> 프로젝터 <삭제> 직류전원장치
10.정보사무기기	9	9	-
11.조명기기	15	19	<추가> 수은램프,메탈할라이드램프,나트륨램프,무전극램프 및 안정기,조명기구용조광기 <삭제> 전기소독기
계	216	247	추가 34품목, 삭제 3품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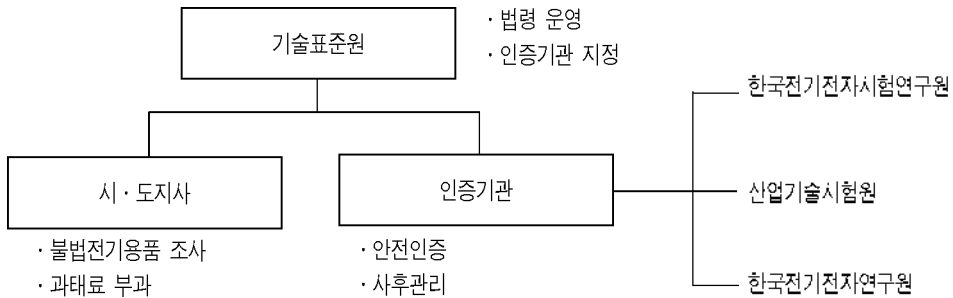


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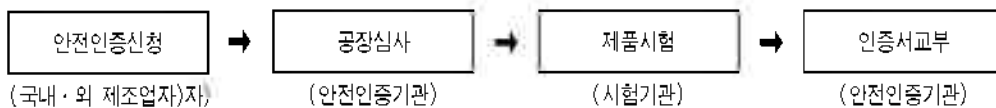
##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

### 1. 국내안전인증제도

- 운영목적
  - TV, 에어컨 등 216개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·감전 등의 위험 및 장애의 발생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.
- 근거법률 : 전기용품안전관리법
- 안전인증제도 운영체제



### □ 안전인증절차



### □ 안전인증 현황( '05. 3월말 기준)

#### ○ 안전인증업체 및 인증건수

인증업체수			인증건수		
계	국내	외국	계	국내	외국
6,590	3,116	3,474	27,761	15,089	12,672



## 2. 주요 국가의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

- 대부분 국가는 제품안전관리를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, 일본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개별법으로 운영

국가(인증)	적용 범위
미국(UL)	전기제품, 건축물구조, 수명장장비, 완구, 위험성물질안전 등 - 17,000 품목 중 전기용품이 60%
유럽(CE)	완구, 압력용기, 가스용품, 전기제품, 의료기기 - 이 중 전기용품은 교류(AC)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
중국(CCC)	전기제품, 브라운관, 타이어 등 130품목 - 이 중 전기용품은 100품목
일본(PSE)	전선, 가전기기 등 112개 전기용품(임의인증 340개 품목)
한국(EK)	216개 전기용품